

의안번호	제 26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
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현문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4월 11일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현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4월 11일

발 의 자 : 김현문·이정범·박병천
박용규·박재주·유상용
이윅희 의원

1. 제안 이유

학교 학부모회 운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
학부모회 회장의 연임 규정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한 차례로 제한된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 규정과 관련해 충청북도 내
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
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.(안 제8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
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
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
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원의 임기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임원의 임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4. 20.] [법률 제18841호, 2022. 4. 20., 타법개정]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
2.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
3.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
4.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8. 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·학예진흥에 관한 사항
9. 학교체육·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10.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
11. 교육·학예의 시설·설비 및 교구(敎具)에 관한 사항
12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13. 특별부과금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
14. 기채(起債)·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
15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
16.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17. 그 밖에 해당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

□ 교육기본법

[시행 2022. 3. 25.] [법률 제18456호, 2021. 9. 24., 일부개정]

- 제5조(교육의 자주성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, 교직원·학생·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제13조(보호자)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.

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 3. 17.] [충청북도조례 제4010호, 2017. 3. 17., 타법개정]

제2조(용어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17.3.17.>

- 1.“농·산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- 2.“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에 소재하는 작은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·중학교를 말한다.